

악세스권의 현대적 의의와 그 행사

원 우 현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매스미디어에의 악세스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 영미법의 실천에서 나타난 매스미디어에의 악세스권은 명예훼손이나 일방적 주장에 의한 보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의 반론권 또는 비영리광고란을 살 수 있는 권리 등과 관련 지어 나타나서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의 악세스권은 최광의로는 매스미디어로부터 소외된 국민이 자기의견을 표명하는 광장을 매스 미디어의 기능에 의존하고, 또한 매스미디어를 이용하는 권리를 총괄하는 일반적으로 이용권을 뜻하고 광의로는 실행 가능성이 주어진 수용자의 정보추구능력의 한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제한적 이용권을 뜻하고 협의로는 매스미디어에 공개됨으로써 명예훼손 등 개인적 법익에 침해 받은 자가 그 매스미디어에 게재하여 반론·변명 등을 공개하는 권리를 뜻한다.

1. 악세스권의 배경

현대정보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로 법적 보장을 받으려면 국민이 매스미디어로부터 수동적으로만 정보를 전수 받는 위치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한다. 수용자가 매스 미디어에의 정보추구권이 있음은 물론 정부를 상대로 정부정보에 접근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때 알 권리가 추상적 개념을 벗어나 구체화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개인의 악세스권(정보접근권)의 주장은 언론기관이 제 4 부로의 기능때문에 헌법상 우월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명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의 악세스권의 한계가 해결되어야 할 숙제다. 한편 정부나 국가도 국가의 안보 등 국가법익의 보호를 주장하여 자의로 정보관리를 필요로 하는 바 이는 국민의 악세스권의 주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악세스권은 물론

언론의 자유도 그 충분한 실행을 위해서는 국민, 매스미디어 그리고 국가라는 세 차원에서 접근해야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디어 수용자가 보정추구행동을 할 때 자신의 인간가치를 보지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이는 정보원과 접촉하려는 의사나 행위로 나타나거나 주어진 메시지 내용 중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선정하는 행위로도 나타난다. 정보접근행위는 이 점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보장인 헌법 제 9 조와 포괄적으로 관련되며 새로운 인권에 대한 개념정의가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의하면 수용자의 정보추구동기는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슈람(Schramm)의 보상설도 있고, 한편으로는 로젠그렌(Rosengren) 이나 윈달(Windahl)이 제시한 매스미디어 사용 및 그것으로부터의 만족이라고 설명하는 기능설 등도 있다.¹⁾

이와 같이 수용자의 정보추구 본능을 법의 테두리안에서 어떤 권리로 해설할 것인가가 액세스권의 규범적 측면과 커뮤니케이션 이론과의 관계로 나타난다. 국민이 매스미디어에 자기 의견을 발표하거나 미디어를 이용하는 「접근이용권(right of access)」과 매스 미디어가 이미 전달한 정보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의 주장이 매스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이라는 점과 국민의 권리보장이라는 면에서 논의되어왔다. 여기서 언급한 반론권은 국민의 알권리에 근거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매체에 대한 액세스권이나 접근이용권도 그 근거가 된다. 앞으로 후술하겠지만 미국에서는 반론권을 넓은 의미의 매스 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의 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실의 보도뿐 아니라 주로 의견 내지 공공적 쟁점을 중심으로 반론권이 전개되고 있는 점이 그 특징이다.²⁾

주지하는 바대로 액세스권은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 출판의 자유(제 20 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 9 조)를 구체적으로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학력상의 이론의 일부다. 개괄적으로 보면 헌법상 학문 ·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와 같이 정신의 자유에 속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범주에 속하고, 직접적으로 행정권과 사법권을 구속하지 않는 생존권의 프로그램적 효력만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또한 액세스권은 비교적 근자에 논의되는 프라이버시(privacy)의 권리(제 16 조), 환경권(제 33 조)등과 같이 포괄적 인권 규정이 그 해석을 지도하는 권리로 적용된다. 이 포괄적 인권 규정은 역사의 생성발전과 정보사회의 출현 등 새로운 여건에 맞게, 새로운 인권개념을 해석하고 확대하는데 그 기능을 행한다.³⁾ 액세스권의 기저의 일부가 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나 언론의 자유의 향유라는 면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알 권리가 단순히 매스 미디어가 전달해 주는 프로그램을 수용자가 전수 받는 소극적 권리를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더욱이 신문 · 방송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정보산업이 「Pay TV Cable」, 「Personal Computer」, 「videotext」 등을 개발하여 언론의 정보전달능력을 보다 다양화하고 정보접근기회를 넓힘으로써 수용자의 능동적이고 선별적인 정보추구행위가 강조되는 것이다.⁴⁾

그러나 지금까지 현행헌법 제 20 조에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논의해 온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이론을 구성하게 되고, 특히 미국헌법의 이론적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흡수하는 경향이 있었다.⁵⁾ 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개인의 주권적 권리로서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로 보장되지 않는 한 인권보장의 의미는 적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본래의 가치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수용자는 매스 미디어에 의하여 전달 받지만, 적극적으로 정부정보에의 액세스권(정부정보청구권)에 의하여 실현되는 국민의 알 권리, 의견광고 및 반론권을 실현내용으로 하는 매스 미디어에의 액세스권의 보장을 전부 포함하는 전체적인 법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현대적 의미에서 언론자유는 이와 같이 포괄적, 통합적인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의미하고 있다.⁶⁾

본고에서는 우선 배런 (Barron)교수나 존슨(Johnson)위원 등의 액세스권 학설을 서술하고, 액세스권의 현대적 의의와 반론권의 문제, 그리고 그 행사에 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II. 배런 (Barron)교수의 접근권 해석

미국에서 매스 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의 요구는 먼저 방송미디어에 대한 반론권의 형태로 제기 되었다.

매스 미디어에 대한 공중의 접근권은 공평의 원리(the Fairness Doctrine)나 연방대법원의 화이트(White) 판사가 레드 · 라이온(Red Lion)사건에 대한 사적 의견을 개진하는 데서부터 논쟁이 촉진되었다. 그 당시 논쟁의 요지는 공중이 신문이나 라디오 · 텔레비전 같은 미디어에 접근권을 갖느냐는 여부결정과 공중이 원하는데도 미디어 특히 방송매체에의 접근이 거부될 수 있는지의 문제였다. 그 당시 접근권을 인정하는 주장을 한 사람은 조지 · 워싱턴 대학교 법대교수인 배런 (Barren)교수였다.

그는 레드 · 라이온(Red Lion)사건에서 미디어소유자나 경영주의 권리보다는 수용자의 입장인 공중의 권리라는 면에서 수정헌법 제 1 조를 재구성할 근거를 찾아냈다. 레드 · 라이온(Red Lion)사건이 연방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배런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언론검열보다 미디어가 실제로 수용자에게 게이트키퍼 과정(gatekeeping process)에 의해서 실제로 시행하는 검열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위험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정헌법 제 1 조 이론의 재조명을 촉구했다. 그 논지는 아이디어에 대한 매스 · 미디어의 전용이나 억제기능에 현실적으로 대처할 때만 자유언론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한편

배런교수는 매스 미디어경영에 작용하는 상업주의가 일반 미디어가 소수나 비정통파의 아이디어를 공중에게 전달하지 않는 주요원인으로 지적했다.⁷⁾ 배런 교수는 허버드 · 로 · 리뷰(Harvard Law Review)에 게재한 「Access to the Press – A New First Amendment Right」란 논문과 「Freedom of the Press for Whom? (The Right of Access to Mass Media)」란 책에서 액세스권론을 주장했다. 그는 「사상의 자동조작이 작용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사상을 전달하는 힘에는, 경제적 교환에 불평등이 있듯이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평등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상을 전달하는 힘에는 불평등이 없다는 주장은 돈키호테와 같다. 표현의 자유가 매스 미디어의 경영자가 누릴 은혜로 주장되면 그 권리는 빈약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매스 미디어에 대한 수용자의 액세스권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 1 조의 재조명을 요구한 배런은 수정헌법 제 1 조의 목적은 정치적 진실의 발견과 확산 그리고 공공질서의 유지기능이라고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정보의 다양성과 이를 확보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통로를 실제로 통제하고 있는 정부권력층은 아니지만 소수 경영층이 그들의 미디어에 접근행위(access)를 거부함으로써 권력층이 수정헌법 제 1 조에 의하여 억제되는 이상으로 언론자유를 억제하고 있는 점을 금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정보접근(악세스)에 대한 억제가 사적 집단에 의하여 유효하게 실행된다면 정부의 공권력행사를 억제한다 해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없으며, 헌법상으로 정부가 표현자유를 규제 금지함은 공중의 토론이나 의논을 위한 적절한 기회를 확보하는 조치이다. 매스 미디어가 헌법상 보장받은 이익은 수용자가 자기 의견을 표시할 지면을 요구하는 이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배런은 알렉산더 · 마이클존(Alexander Meiklejohn) 교수와 같은 수정헌법 제 1 조의 확대해석주의자의 어휘를 인용했다.

마이클존(Meiklejohn) 교수는 미디어의 접근(access)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애기되어진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에게는 접근권이 아이디어 지향적이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권리」를 부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배런 (Barren)은 상업주의가 매스 미디어에 현재처럼 지배적일 때는 수정 헌법이 변경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헌법수정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정보접근권은 「공감하는 법정」이 합법화된 의회법률제정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레드 · 라이온(Red Lion)사건에서의 화이트 판사 의견을 인용하면서 배런은 그의 의견에 대해 「확대해석론」을 택했다.

배런이 미디어, 경영층과 수용자의 접근권의 조화를 주장하는 조화이론의 근거를 여러 판례에서 찾고 있는데 뉴욕 · 타임즈 대 설리반(New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254, 1964)사건에서는 의견광고의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해석하고 긴즈버그 대 미합중국(Ginzberg v. United States, 383 U.S.463, 1966)사건에서는 자유로운 언론에 관한

수정헌법 제 1 조를 보장하는 새로운 실용적인 접근을 처음 시도했다고 이해하고, 그 조정역할을 국가에 맡기고 있다. 국가가 액세스권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서 법원에 의한 집행(judicial enforcement), 제정법에 의한 해결(statutory resolution), 액세스권을 보호하는 행정적 가능성(administrative feasibility of protecting a right of access)을 제시하고 적어도 자의적인 사건에서는 입법론과 관계없이 액세스권의 구체방법을 법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본다. 만약 이 같은 조치를 사법부가 수용하지 않을 때 헌법에 지면할애의 자의적인 거부를 못하게 하고 다양한 의견표명을 위한 효과적인 광장을 확보할 수 있는 액세스권법의 제정을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배런의 액세스권 이외에도 FCC의 위원인 니콜라스·존슨(Nicholas Johnson)의 액세스권이나 화이트, 브레난 판사의 액세스권론이 개진된 바 있다. 존슨은 매스 미디어가 권력의 연원이고 의사소통을 위해 메시지를 전달할 권리가 있다는 관점에서 액세스권을 주장한다. 그는 액세스는 모든 시민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충분한 기회를 뜻한다. 오늘의 미국의 권력은 TV 스크린을 누가 소유하고 지배하며 검열권이 누구에게 있어서 프로그램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미디어를 장악하는 힘에서 오히려 모든 권력-정치적, 경제적 권한 등-이 나온다고 본다. 이는 외국의 침략이나 군사정변이 발생하면 최초로 장악하여 통제하는 것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이라는 사실에서 그의 매스 미디어의 권력연원론을 내세워 보려한다. 그는 BEM v. FCC 사건에서 FCC의 다수의견을 비판하는 소수입장에서 미연방 수정헌법 제 1 조는 말할 권리뿐만 아니라 청중에 도달할 권리인 전달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토론이나 의견교환을 위하여 시청자에게 제공된 광장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함은 물론 사상을 전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의 보호도 추상적인 언론의 자유처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구체적 상황에 따른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방 수정헌법 제 1 조는 영리적 언론보다 정치적 언론을 우선 시킨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도 FCC의 결정은 방송국에 영리적 광고는 자유로 받아들이고, 정치적 프로와 의견이 상반된 당사자간의 광고는 거절할 자유를 부여한다고 비판한다.⁸⁾ 위와 같은 견해는 올람(Wollam v. City of pulm sprinse, 379p. 2d. 481. Cal 11963)사건에서 피력되었는바 그 내용의 일부는 하기와 같다.

자유로운 언론은 필연적으로 그 전파를 위해 사용되는 수단을 포함한다. 그 권리는 그것을 표현하는 실재의 방법이 없으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언론이 사용하는 전달수단이나 기술·기재의 보호보다는 메시지 내용의 검열이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것만으로 이해한다면 결국 그 권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언론자유에 말할 권리는 전달할 권리를 근원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오히려 언론자유는 전달기능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며 그것은 효과적인 전달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여⁹⁾ 전달할 권리이론으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측면에서 액세스권을 강조하고 있다. 또 그는 시민간의 견해를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교환의 광장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임을 판시한 구체적인 예[Hague v. Clo, 307U. S.436 (838)]나 전달의 공적 광장에의 액세스권을 승인한 판례[Tinker v. Des Moines School Dist. , 393 U. S. 503(1969)]로

들고있다. 화이트, 브레난 판사는¹⁰⁾ 레드·라이온[Red Lion Broadcasting Co. v. FCC, 395U. S. 367 (1963)]사건에서 그의 의견을 下記와 같이 피력했다.

제일 존중되어야 할 것은 수용자의 권리이고 방송경영층의 권리가 아니다. 정부나 사적 면허권자에 의해서 사상의 시장을 독점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리가 결국 장악하는 자유공개시장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수정헌법 제 1 조의 목적이다. 공적 사항에 관한 언론은 자기표현이상의 것이고 그것은 자치의 본질이다. 본건에서 결정적인 것은 사회적, 정치적, 심미적, 도덕적인 내용은 물론 기타의 사상과 경험에의 적절한 액세스를 받는 공중의 권리다. 이 권리는 연방의회나 FCC에 의해서도 합헌적으로 감축할 수 없다.¹¹⁾

브레난 판사도 로젠브룸 대 메트로미디어(Rosenbloom v. Metromedia)사건에서

「헌법판결은 언론에 대한 액세스에의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Ⅲ. 액세스권의 현대적 의의

정보원의 자유란 구체적으로는 정부정보에 의 접근권(right of access to governmental informational)을 말한다.¹²⁾ 그러나 매스미디어에의 액세스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 영미법의 실천에서 나타난 매스미디어에의 액세스권은 명예훼손이나 일방적주장에 의한 보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자의 반론권 또는 비영리광고란을 살 수 있는 권리 등과 관련지어 나타나서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의 액세스권은 최광의로는 매스미디어로부터 소외된 국민이 자기의견을 표명하는 광장을 매스미디어의 기능에 의존하고, 또한 매스미디어를 이용하는 권리를 총괄하는 일반적인 이용권을 뜻하고 광의로는 실행 가능성이 주어진 수용자의 정보추구능력의 한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제한적 이용권을 뜻하고 협의로는 매스미디어에 공개됨으로써 명예훼손 등 개인적 법익에 침해를 받은 자가 그 매스미디어에 게재하여 반론·변명 등을 공개하는 권리를 뜻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액세스권은 광의·협의를 모두 포함하는 최광의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안용교 교수는 주장한다. 매스미디어 이용의 형태와 방법에 따라서 액세스의 구체적 방법이나 내용도 다양하지만 액세스권이란 법적 관리를 보장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자기의견을 대량으로 전달하는 의견광고와 매스미디어의 보도·논설·기사·광고등 보도행위 전반에 대하여 수용자의 반론을 제기하는 반론권이 거론됐을 뿐이다.¹³⁾ 이와 같은 액세스권의 개념을 콘(D. S. Cohn;1972)과 슈미트(Benno C. Schmidt, Jr. ;1976)는 각기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콘(D. S. Cohn)¹⁴⁾은 접근권을 일반적으로 액세스권(general right of Access)과 한정적 액세스권(limited right of Access)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공적 쟁점에 관하여 한가지 관점을 갖는 집단의 대변자가 이미 동일매체에 보도된 내용에 다른 입장을 개진하기 위해서

인쇄매체나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이며, 후자는 대통령이 공식적, 체제적인 여론의 대변인으로서 방송시간을 할당받아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면 동일쟁점에 관해서 상반된 견해를 가진 집단의 대변자가 이를 반론하기 위하여 동일미디어에 방송출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제한된 의미로 이해한다. 한국 대통령 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가 지명한 지지연설자의 방송매체출연을 보장한 것은 이와 같은 한정적 액세스권의 보장을 의미한다. 미국의 공평의 원칙도 공공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쟁점에 관하여 대립하는 여러 견해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상당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대우를 하도록 방송당국에 의무를 지우는 것인바 근본정신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슈미트(Benno C. Schmidt, Jr.)의 실명에 의하면, ①명예훼손을 당한 자가 명예권 보호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구제방법은 명예훼손적인 공표를 한 자가 법원의 판결을 공표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②일정한 공직의 입후보자가 같은 공직의 다른 후보자에게 자기선전을 허용한 미디어에서 동일하게 자기선전을 할 권리 ③의견을 달리하는 표현에 답하여 특정출판물에서 집단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 집단 대표자의 권리 ④반드시 불이익은 아니지만 성실성이나 품위에 손상되는 공격을 받은 자가 동일한 미디어에 자신의 반론을 일반에 공표할 권리 ⑤독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디어에 효과적인 광고전달을 위해 광고할 권리 ⑥동종이면 어떤 상품, 서비스 또는 사상까지 광고를 미디어가 수리하고 신청순으로 광고낼 권리 ⑦법원 또는 공무원의 판단으로 실질적인 공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결정된 어떤 보도내용, 이를 요구 받은 미디어가 그에 관해 논설을 쓰고 뉴스보도나 광고를 낸 내용에 관해서는 일반 수용자는 누구나 무료로 견해를 공표시킬 수 있는 권리 등을 나열했다. 이는 액세스권에 명예훼손이나 일방의 주장의 보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의 반론권이나 의견광고(비영리 광고란을 살 수 있는 권리)등과 관련지어 실천되어 왔고 이를 보면 액세스권이 그 내포와 외연이 얼마나 다양한 개념인가를 알 수 있다.¹⁵⁾

IV. 매스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의 법적 근거

국가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로서의 매스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의 근거는 현행헌법 제 20 조 1 항과 2 항에서 찾을 수 있다. 대통령 선거법(126 조), 언론기본법(49 조), 상법(289 조 3 항)등은 이러한 액세스권을 승인한 법적 보장으로 이해된다.¹⁶⁾ 전술한 바와 같이 제 20 조의 언론출판의 자유가 정보의 자유(Informationfreiheit)를 내포하는가도 문제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만을 받아들이는 자유도 포함하는가의 문제가 있다.¹⁷⁾ 표현을 받아들이기는 자유는 「읽을 권리」와 「알 권리」라고도 말하여진다. ...생각컨대 알 권리, 즉 「정보의 자유」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을 위한 전착로서 민주정치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현행 헌법도 이를 인정할 뿐아니라 언론기본법이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언론기본법 제 2 조 1 항에 의하면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알 권리를 방해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바, 이는 정보원에 접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인 정보원의 접근권까지 포함함이 당연하다. 이와

관련, 언론기본법의 언론의 정보청구권(언기법 제 6 조)도 수용자에 대한, 언론에 대한 접근권의 근거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¹⁸⁾ 일반 수용자의 정보충족 욕구를 신문이나 방송이 보도 · 오락기능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익사항에 대한 정보를 예외로 (제 6 조 단서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의무가 있음은 당연하고 이는 간접적으로 악세스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일반 국민이 정보를 획득하는 유일한 수단은 통치 기관의 의사진행 (proceedings)에 접근하는 자유(Freedom of Access)에서 비롯된다. 민주사회에서 자유로운 신문의 역할은 공공정책에 관한 모든 의사에 접근할 권리가 있음을 추정케 하고 통치기관의 악세스권이 여기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국민의 이와 같은 접근할 권리가 없으면 자유로운 신문의 기본적기능은 연방의회 또는 집행부에 의해 훼손되고 말 것이다.¹⁹⁾ 악세스권의 법적 성격은 악세스권의 근거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전통적인 언론의 자유가 국가권력의 불작행위를 요구하는 자유임에 대하여 악세스권은 국가권력의 행사를 요구하여 그 실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회권적 성격을 가지는 권리인 것이다.²⁰⁾ 상술한 바대로 일조권이나 알 권리 등과 같은 악세스권은 기존의 개별적 인권조항을 근거로 이론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행헌법에도 악세스권 등 새로운 법익에 관해서 개별적 보장규정이 있기는 하나, 그것이 「새로운 인권」 침해에 종래의 헌법 해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그 개별적 보장규정이 구체규정이 되도록 새로운 이론을 구성해야 한다. 예컨대 프로그램 규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구체적 구체규정이 되도록 보장이론을 연구해 내야 한다.²¹⁾ 정보화 시대로 접어든 현대적 언론상황에서 자유로운 언론은 매스 미디어를 직접 소유하지 않은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인 개인의 인격적 법익보호, 즉 인간의 인격상의 변조를 거부 등과 진실에 부합, 국민의 자기통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을 사실상 지배하는 보도에의 접근이용을 가능하게 국가가 보장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악세스권의 의의와 관련된 몇가지 측면을 고찰해 보았는데 그러면 악세스권의 구체적인 적용과 그 실행방법은 어떠한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겠다. 우선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 1 조에서 『연방의회는...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원이 『미국의 언론 · 출판의 자유는 헌법제정이전에 이미 Common Law 에서 확립된 예외, 즉 명예훼손(libel, slander), 외설한 언사(obscene indecent language)등의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²⁾ 위의 예는 수정헌법의 해석이 시대변천에 따른 법익창출과 관련하여 어떻게 변용되고 적용될 것인가를 암시하는 바, 이는 언론의 접근권의 실행에 도관련이 깊은 것이다. 미국의 경우 악세스권의 실행에 관해서 어떤 방법이나 해석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V 언론에의 접근권의 부여

도널드 · 길모어 (Donald Gillmor) 교수에 따르면 언론의 접근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연방수정헌법 제 1 조 이론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미디어가 제재를 받을 경우에도

정부의 권한이 박탈당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유효할 뿐 아니라 개개인의 의미있는 표현을 창출해 낼 수 있다. 만약 연방수정헌법 1 조에 접근권의 법익보호를 호소할 수 있다면 접근권을 실행하는데 유용한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음미할 필요가 있다.²³⁾ 매스미디어의 액세스권의 실현은 주로 시청자의 권리 · 의견광고 · 반론권 등으로 실현된다. 미국의 경우 시청자의 권리나 의견광고 또는 반론권은 일반적으로 공평원칙에 의하여 실천되고 있다. 그러면 언론에의 접근권을 부여하는 사법적 실행, 호구에 의한 해결책(A Statutory Solution) 접근권을 보호하는 행정적 실현가능성 등을 살펴보겠다.

1. 사법적 실행

길모어 교수가 실행방안으로 내세운 것은 신문의 무차별적인(nondiscriminatory) 접근권인데 수용자가 공공쟁점에 대한 의견을 말로 나타내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그 개개인이나 집단에 사법적인 구제책이나 배상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정보접근실행권은 자연적으로 대부분 「편집인에게 보내는 독자의 편지」란과 광고면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미국법에 정보접근권과 같은 권리를 확립해야 한다는 압력은 수정헌법 1 조의 절대적 권리로 보장받은 매스미디어의 경영인이 수용자가 승소하지 못하는 특정한 상황에서도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는 근거를 보통법의 정신에서 찾고, 판례로 여러 재판 과정에서 주장해 온 것을 간파할 수 있다. 광고주 편에서 보면 광고료나 지면량의 제한 때문에 제한을 감수하면서 무차별 접근을 시도한다. 어느 경우나 이와 같은 사건은 신문발행인이 지면부족을 주장하는 일이 없지만 액세스권(the right of access)은 단순히 거부되어 왔다.²⁴⁾ [참고 : Shuck v. Carroll Daily Herald, 215 Iowa 1276, 247 N. W. 813 (1933) ; J. J. Cordon, Inc. v. Worcester Telegram Pub. Co., 343 Mass. 142, 177 N. E. 2d 586 (1961) ; Mack v. Costello, 32 S. D. 511, 143 N. W. 950 (1913)]이 사건에서는 언론의 접근을 강요하는 입법적 권리를 고려하지 않았다. 다른 사건에서는 보통법권리를 부정해왔으나 그 영역에서는 입법을 위해 수용할 만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Approved Personnel Inc. v. Tribune Co., 177 So.2d 704 (Fla. 1965); Friedenbergs v. TimesPub. Co. , 170 Ill.3d, 127 So. 345 (1930) ;Inre Louis Wohl, Inc. , 50 F. 2d 254(E. D.Mick. 1931) ; Poughkeepsie Newspapers, Inc., 205 Misc.982, 131 N. Y. S. 2d 515(1954).]. 이상의 사건의 경향은 신문이 공공이용물(public utility)이 아니라는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claimant)의 정보접근을 추구하는 목적에 상관 없이 행동의 자유(freedom of action)를 갖는다고 본다. Uhlman v. Sherman 사건에서 오하이오 주 하급심은 지역신문에서 공중의 상호의존성과 이익은 특히 그 지역에 신문이하나인 경우, 광고의 판매가 동일한 기준에서 공중의 모든 성원에게 공개되어야만 한다는 합리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류의 사건중 어느 것도 수정헌법 제 1 조를 원용하여 판례로 하는 걸 고려하고 있지 않다. 긴급한 정보접근권에 대하여는 신문발행인이 그가 선택한 대상을 다루는 어떤 상인같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계약의 자유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내세우고

무작정으로 호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항을 받아왔으나 장래에는 고무적으로 예견된다. 이와 같은 상업광고사건의 광범위한주장은 정치광고에도 적용돼야 할 필요는 없다. 법원은 표현권의 보호는 물론이지만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정헌법 제 1 조의 재해석 대신에 접근권을 부여할 수 있다. 독점신문의 지면에 대한 접근권은 애반스 대 뉴튼(Evans v. Newton) 사건법정에서 다수표를 얻은 더글라스(Douglas) 판사의 공개형식의 「공적 기능(Public function)」 이론에서 단정되었다. 그와 같은 이론은 「국가행동(state action)」과 같은 지나친 개념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유인 공원이 「공공적 성질(public character)」이 또한 있다는 점을 감수해야 하는 결점을 피할 수 없다면 같은 이유에서 그 지역사회 내의 인쇄 커뮤니케이션의 공통적인 저널인 신문이 준공중(quasipublic)신문 때문에 받을 헌법적 제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독점적인 신문이 실제로 유사공중과 관련된 기관이라면 특정한 소신이나 관점을 심는데 지면 할애를 거절한다면 이것은 연방수정헌법 제 1 조에 대한 낭만적 견해조차도 벗어나 표현권을 박탈하는 주정부의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2. 법칙에 의한 해결책

이상에서 서술한 판례나 재판결과 등 사법적인 방법 이외에 더욱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입법을 통해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접근방법일 것이다. 법규정은 예컨대 정보에의 접근을 거절하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이성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최소한 적절한 요구사항을 부과해야 한다. 일부 사건에서는 발행의 법적인 의무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정보접근권에 대한 헌법적 기반은 고려된 바가 없어왔다. 이에 대응해서 매스미디어에 접근권을 제공할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입법은 다음 이론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즉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성질이 있으면 유사공중적 도구성(quasi-public instrumentalities)에 대해서는 같은 유사공중기능(quasi-public functions)을 부과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매스미디어에 더 접근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방수정헌법 제 1 조의 수정이 필수불가결하지는 않다.

악세스권은 실험적으로나 개혁적인 입법조치를 시도하는데 적절한 영역일지 모른다. 실험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한 도시가 적은 주를 지배하는데 그 도시에 독점신문이 있는 경우에 접근권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와 인구도 많고 도시도 많은 주 내에서 수많은 미디어가 경쟁할 경우에 접근권은 전혀 달리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접근권을 보호하는 행정적 실현가능성

만약 액세스권이 인정된다면 접근권의 한계가 주의 깊게 정의되어야 할 때 행정적 실현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다. 최근사건인 Office of Communication of the United Church of Christ v. FCC 에서 유추할 수 있는 대로 무차별접근권(nondiscriminatory access)이 사법상 실현가능하다는 예를 제시했다. 정보접근을 추구해서 얻은 자료가 정말 신문 때문에 과소평가되는지도 상당히 고려해 볼 일이다. 만약 특정한 사건이나 쟁점에 접근하겠다는 많은 청원인이 있다면, 오직 한가지에만 접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 상황적 접근방법(contextual approach)을 개발하는 것이 접근권이 특정한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어떤 아이디어가 무시되는가의 정도를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다. 만약 한 지역사회 내의 모든 미디어가 같은 소유권에 속한다면 정보접근을 요청하면 더 매력있게 보였을 것이다. 이 것은 다양한 미디어가 동일시청자에 도달하는 경우까지도 다른 기능을 하고 다른 반응과 기대를 생성할 것이다. 다른 한편에 동일한 미디어내에 경쟁이 존재한다면 액세스권을 요청하는 힘이 약화될 것이다. 한 미디어 내의 경쟁은 뜻이 있는 의견이 신문지면이나 방송시간에 실리는데 곤란이 따를 수도 있다. 미국에서 그 동안 제소된 액세스권 사건은 거의 모두 지역사회의 독점신문이 있다. 결론적으로 볼때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성질이 변화함에 따라서 일반국민이 다양한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매스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법이 공중의 이익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아이디어가 상처되고 현대사회에서 행동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개개인이 정보를 추구해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액세스권이 헌법적 원리로 인정되어야 한다.²⁵⁾

끝으로 매스 미디어에의 액세스권의 실현이 상술한 바와 같이 시청자의 권리나 의견광고 그리고 반론권 등으로 실현된다. 여기서 반론권에 관해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매스 · 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의 요구는 먼저 방송미디어에 대한 반론권의 형태로 제기되어 그 실현을 보았다.

1969 년의 레드 · 라이온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이른바 「공평의 원칙 (fairness doctrine)」 및 동 원칙에 근거한 이른 바 「Personal attack rule」 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여기서 「공평의 원칙」 은 공공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쟁점에 관하여 대립하는 제 견해에 대해 토론을 위한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과 이때에 공평한 취급이 이루어질 것을 방송사업자에게 의무 지우는 프로그램기준이고 「personal attack rule」 이란 방송을 통하여 공격을 받은 개인이나 집단에게 반론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 FCC(연방통신위원회)의 규칙이다. 특히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이들 원칙의 합헌성을 단순히 방송주파수의 유한성이나 희소성이라는 전통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이 아니라, 「사상이나 경험에의 적절한 액세스를 받을 공중의 권리」 에 의거하여 지지한 점에서 주목되었다. 공평의 원칙에 의거한 반론방송의 요구는 사회, 정치적인 쟁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레드 · 라이온 사건보다 1 년전의 반즈호프 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은 담배광고에

대한 반론방송의 요구를 지지하였다. 뉴욕의 변호사 반즈호프가 공평의 원칙을 담배광고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FCC에 요청한데 대해 FCC는 재결하기를 담배광고를 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에게 금연하도록 경고하는 광고메시지에 무료로 방송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방송사업자는 연방항소법원에 제소하였으나, 동 법원은 FCC의 재결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 판결과 레드·라이온 사건판결을 계기로 이후 자동차·가솔린 등 담배 이외의 상품광고, 정부의 군대모집광고, 대통령의 텔레비전연설 등에 대해서까지 반론방송의 요구가 확대, 속출하였다. 그러나 반론권을 비롯한 액세스권의 급격한 전개를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론의 입장에서 방송의 자유를 주장하는 방송사업자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고, 1973년 연방대법원이 CBS(CBS v. DNC) 사건에서 의견광고방송요구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제동이 걸렸다. 또한 FCC도 1974년 5월, 공평의 원칙을 재검토한 보고서 속에서 동 원칙의 확대적용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방송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에 한계를 설정하였다.²⁶⁾ 그러면 액세스권의 실현으로서 반론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VI. 반론청구권

국민이 매체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발표하고 매체를 이용하는 「접근이용권(right of access)」과 매체의 정보전달에 대한 「반론권(right of reply)」을 행사할 수 있는 오늘날의 새로운 권리의 주장은 매체의 사회적 책임이 국민의 권리보장이라는 형태로 구체화해 가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반론권의 근거는 국민의 알 권리, 구체적으로는 매체에 대한 정보접근권이 그 기저를 이룬다. 반론권(Gegendarstellungsrecht) 또는 반론청구권(Gegendarstellungsanspruch)은 매스미디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의 입장에서 사실의 경과를 서술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사실에 대한 사실(Tatsachen gegen Tatsachen)」로서 반론하는 데 있다.²⁷⁾ 그 기본적인 성격은 매스미디어로부터 시민의 인격적 법익을 보호하는 관리라는 데에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법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유럽대륙에서의 반론권제도는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실에 관한 보도뿐 아니라 논평이나 비판 등 의견 내지 가치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반론을 인정하는 제도로 프랑스법 및 이를 도입한 벨지움법, 이탈리아법 등이 이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사실의 보도에 국한하여 반론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독일의 각 주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명예 등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대해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법리를 발전시켜온 한편, 언론의 자유 특히 신문의 자유를 중시하여 왔기 때문에, 미국의 극히 소수의 주법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한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반론권이 인정되지 않았다.²⁸⁾

이와 같은 반론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학설 및 판례상의 쟁점(Loffles Pressecht 1968, 213 면 이하, 이준구 논문 재인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독일민법 제 1004 조(침해의 제거정지청구권에 관한 조항이며 우리나라 민법 제 204 조에 해당된다)와 아울러 민법 제 823 조 1 항「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 신체 · 건강 · 자유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에서 반론권을 정립하고자 하는 견해이다.

(2)반론권을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연역하고자 하는 견해에 의하면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 특히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구하는 권리(언론기본법 제 1 조 1 항 및 제 2 조 1 항)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도에 관계된 자에게 반론권이 귀속되므로 반론권은 인격의 침해 또는 인격의 위해에 의거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반적 인격권의 불법적인 침해 없이는 반론인쇄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언론기본법상의 규정은 「불가침」이란 어구에서 명백한 것과 같이 순수한 정지청구권(Unterlassungsanspruch)에 불과하므로 적극적인 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의 근거가 아니라고 본다. 또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의 권리 규정으로부터도 반론인쇄를 구하는 청구권은 연역할 수 없다는 이유는 인격의 구현을 위한 권리는 자유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적극적인 행위를 구하는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²⁹⁾ 그밖에 표현의 자유 조항을 원용하여 반론권을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의 보도의무」에 근거를 두는 견해도 있다. 즉 미디어보도에 관계된 자의 적절한 반응은 보도에 응답하는 여론기능의 하나다. 따라서 이 권리는 국민에게 여론에 참가할 권리를 주는 자유로운 의견발표라는 기본권에서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보도에 관계된 자에게 부여하는 보도에 대한 권리, 즉 보도에 관계된 자는 동일 간행물의 동일한 위치에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반론권은 인격권과 여론형성에서의 협력권의 두 가지 근거에서 야기된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Loffler 224p. 이하). 즉 독일연방대법원은 반론청구가 인격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특히 특별한 법 영역에 있어서의 일반적 인격권이 법적으로 보다 상세하게 규정된 권리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간단히 살펴보겠다. 우리나라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제도는 주로 서독 각주의 출판법에서 규정하는 반론권조항을 모범으로 하여 부분적으로 변형을 가한 것이다. 현재 한국 제도는 개인의 인격적 법익침해에 대한 구제수설이라는 데에 그 본질이 있고 언론의 다원성 확보라는 새로운 현대적 차원의 반론권이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언론기본법상 정정보도청구권제도의 특징이나 성격을 다음과 같다고 본다.³⁰⁾

첫째, 「사실적 주장」(언기법 49 조)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만 정정보도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논평이나 비판 등의 의견 내지 가치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론권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이는 본 제도가 본질적으로 개인의 인격적 법익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며,

독점화된 현대 매스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있어서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매스미디어에의 액세스권으로서의 성질은 희박한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용어상으로도 양건 교수는 「반론권」 보다는 「반박권」의 일종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둘째는, 보도된 사실적 주장이나 여기에 대한 반박이 진실한 것이냐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이처럼 사실적 진실의 확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형식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제도의 중점이 개인에 대하여 신속한 반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잠정적으로 언론과 개인간의 평형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기본법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은 예외사유의 하나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제 49 조 제 3 항 단서)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예외사유를 확장하며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제도 본래의 의미가 크게 상실될 것이다.

셋째, 정정보도청구소송의 전치절차로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찾기 힘든 제도인데 언론활동에 대한 충격이나 피해자의 권리남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양건교수는 한국언론중재신청사례를 검토하면서³¹⁾ ① 중재결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적다 ② 중재신청기간이 짧은 편이다 ③ 언론법시행령 제 41 조 2 항의 규정에 따라서 중재부는 일정한 경우에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한편, 언기법 제 51 조 1 항에서는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신청을 할 수 없고,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로부터 14 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각의 경우가 동법 제 51 조 1 항에서 말하는 중재를 거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명백하지 않다. 만일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중재위원회의 기능 이상의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로 되어 문제이다. 특히 기각의 사유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석,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

넷째, 동법 제 50 조 8 항에서는 중재위원회가 직권에 의해 심의하고 시정권고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재의 기능을 넘는 권한이다 이 권한은 중재신청기간의 초과 등의 경우에 국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섯째, 정정보도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으로 되어 있으며, 정정보도청구의 거부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규정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법에서는 형사벌도 아울러 부과한다.)

<주>

- 1) 차배근.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p.374, p.378.』 (세영사 1976),
- 2) 양건, "반론권에 관한 소고", 「현대공법의 이론」. (학연사 1982), p.174.
- 3) 구병삭, 「헌법학 I」, (박영사 1983), p.460.
- 4) 원우현, "정보산업의 규제에 관한 소고" (한국신문학회 '83 가을철 학술회의 발표논문요지)
- 5) 구병삭, 상계서, p.461.
- 6) 안용교, "악세스권의 형성배경과 전개", 고시연구(1982. 3), p.28.
- 7) William E. Francois, Mass Media Law and Regulation (2nd Edition Grid Inc.1980), p.501.
- 8) Johnson and Westen, A Twentieth Century Soapbox : The Right to Purchase Radio and TVTime, 25 VA. L. Rev.574 (1971) , 고시연구 (1982.3)p.31 재인용.
- 9) Wollam v. City of Palm Springs, 379 p.2d. 481(Cal.1963) .
- 10) 주 8)과 동일
- 11) Red Lion Broadcasting Co. v. FOC.395 U.S.367(1969).
- 12) 서정우 외, 「언론통제이론」 (법문사 1978), p.94.
- 13) 안용교, "악세스권", 「현대공법의 이론」 (학연사 1982), p.126.
- 14) 상계서, p.125.
- 15) 상계서, p.125.

16) 상계서, p.126~127.

17) 김철수 저, 「신헌법학 개론」 (박영사 1980), p.394.

18) 상계서, p.395.

19) I. Brant, The Constitution and the Right to know, pp.78-79, Mass Media and the Law (D. Clark, E. Hutchinson ed. 1970)

20) 안용교, 상계서, p.127.

21) 구병삭, 상계서, p.464.

22) 권영성, 「헌법원론」 (법문사 1981). p.390.

23) Donald Gillmor & Jerome A Barron, Mass Communication Law (West Publishing Co. 1979) , p.600.

24) 상계서, p.601.

25) 상계서, p.604.

26) 양건, "반론권에 관한 소고", 「현대공법의 이론」, (학연사 1982) p.181~182.

27) 이준구, "반론청구권", 「고시연구」 (1980. 3), p.45.

28) 양건, 상계서, p.175.

29) 이준구, 상계서, p.48.

30) 양건, 상계서, p.175.

31) 상동, p.176.